

# 검토보고서

2024. 2. 27.(화)

검토안건	발의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(안)	신종갑 의원외 8명



복지도시위원회  
[전문위원 장홍용]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 
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(안)”

#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장홍용)

## 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신중갑 의원 외 8명
- 제안일 : 2024. 2. 16.
- 회부일 : 2024. 2. 20. (의안번호 : 24-14)

## 2. 제안이유

-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,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을 보호하고,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(안 제4조)
- 나. 장애인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다.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예산의 지원(안 제6조)
- 라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마. 비밀 준수의 의무(안 제8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, 제9조, 제25조, 제59조의 10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1조제2항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입법예고 : 2024. 2. 13. ~ 2. 19.(제출의견 없음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신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,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,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
-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 - 안 제1조~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 하였고
  -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대상 범죄 및 피해자보호 지원사업을
  - 안 제5조~제6조까지는 장애인 시설 점검 및 예산지원을
  - 안 제7조~제8조까지는 협력체계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하는 등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.
-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살펴보면,
  - 본 제정안은 마포구 거주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범죄피해 예방을 통한 장애인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

하고 있어,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자인 장애인의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런 상황을 악용한 범죄시도 또한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음.

- 이에, 「장애인복지법」에서는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대상 범죄 발생 추이를 감안하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및 장애인 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가 거주지 및 거주시설 등에서 가장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점검 및 조사체계를 강화하고, 피해구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.

○ 2022년 기준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주요내용을 보면

-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4,958건이며,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2,641건으로 나타났으며
- 신고자 유형은 신고의무자 32.8%, 비신고 의무자가 67.2% 이며
- 장애인학대 현황을 보면 신체적학대 34.2%, 정서적학대 25.6%, 경제적 착취 17.4% 성적학대 14% 기타 8.7%
- 피해자 현황을 보면 여성 51.5%, 남성 48.5% 이며
- 학대행위자는 여성이 29.2%, 남성이 70.8%로 나타남.
- 학대발생 장소를 보면 피해 장애인 거주지가 41%, 장애인 거주시설이 16.7%, 학대행위자 거주지가 70.8% 기타 6.4%, 교육기관이 5.6%로 나타남

# <2022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주요내용>

## · 신고접수건수



**장애인학대 신고  
총 4,958건**

■ 학대의심사례  
□ 일반사례



## · 신고자

신고의무자 32.8%

비신고의무자 67.2%



본인  
16.5%



사회복지시설  
종사자  
14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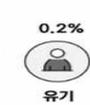


그 외 장애인  
지원기관 종사자  
12.4%



사회복지  
전담공무원  
7.8%

## · 장애인학대 현황



## · 피해자 현황

남성 48.5% < 여성 51.5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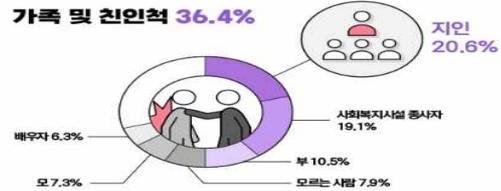
정신적 장애인 77.3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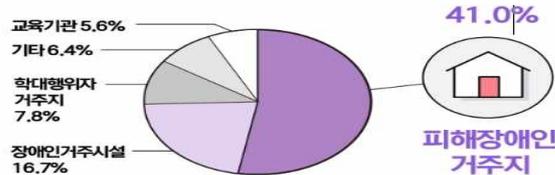
## · 학대행위자 현황

여성 29.2% < 남성 70.8%

가족 및 친인척 36.4%



## · 학대발생장소



○ 종합검토의견

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,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가 장애인 대상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2015년 이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는 점에서도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제1항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. 또한, 같은 법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에 「장애인복지법」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·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조례안이 마포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범죄를 예방하고,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보호·지원할 의무가 있는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,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,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등을 위해 관련기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시설점검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증진과 관계 부서의 실효성 있는 업무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, 「장애인복지법」에서 장애인의 자립, 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담당부서	담당과장	담당팀장
장애인 사회보장과	신희선 (8880)	강은영 (8881)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

## 보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5조(장애인 시설 점검)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한다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#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장애인사회보장과 박소연
연 락 처	02-3153-8887

## 참고 자료

### 1. 관련법령

#### 장애인복지법

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 ①“장애인”이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

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“신체적 장애”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,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.
2. “정신적 장애”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.

③ “장애인학대”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언어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, 경제적 착취,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. <신설 2012. 10. 22., 2015. 6. 22.>

④ “장애인학대관련범죄”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. <신설 2020. 12. 29.>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 등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, 공무원, 근로자,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·「초·중등교육법」·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(이하 “국가기관등”이라 한다)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·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(이하 “인식개선교육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2. 29., 2019. 12. 3.>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3.>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(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3.>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9. 12. 3.>

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12. 3.>

1. 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 제14조 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
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

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

4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9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

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

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3.>

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12. 3.>

⑨ 국가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 등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9., 2019. 12. 3.>

⑩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12. 3.>

1.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

2. 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·보급

3.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

⑪ 제1항 및 제9항의 사업, 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법, 결과 제출 및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12. 29., 2019. 12. 3.>

제58조(장애인복지시설)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 3. 30., 2020. 12. 29.>

1. 장애인 거주시설: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·요양·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

2.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: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·치료·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,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

3. 장애인 직업재활시설: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

(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·가공 시설,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)

4. 장애인 의료재활시설: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, 진단·판정,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

제59조의10(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

2.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·교육·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

3.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
4.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(이하 “피해장애인”이라 한다)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

5.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등에 대한 지원
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

##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

제41조(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) ① 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조·가공 시설, 공장, 영업장 및 판매시설을 말한다. <신설 2021. 6. 30.>

② 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,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<개정 2021. 6. 30.>

## 2. 마포구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

연번	시설명	소재지	비고
1	참 좋은집	충북 충주시 산척면 지속골길71	장애인거주시설
2	계명원	동교로55-10 (망원1동)	장애인단기거주시설
3	한벗동지	월드컵북로12길98 (성산1동)	장애인단기거주시설
4	라운홈	잔다리로9길21, 501호 (서교동)	장애인공동생활가정
5	루치아 공동생활가정	마포대로4라길41, 201호 (마포동)	장애인공동생활가정
6	잔디네집	월드컵로190, 이안상암2차 604호 (성산동)	장애인공동생활가정
7	행복한집	성미산로165-5 (연남동)	장애인공동생활가정

### [서울시 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]

연번	조례명	제정일
1	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	2023. 9. 22.
2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	2023. 7. 6.
3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	2022. 10. 12.
4	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	2023. 5. 11.
5	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	2021. 11. 11.
6	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	2022. 11. 10.
7	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	2024. 1. 4.

